

소상공인 창업교육 때 안전보건교육 실시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창업교육과정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7월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시범 사업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내년도부터 소상공인 안전보건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올 하반기에는 예비창업자 6,460명이 집합교육 형태로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는 연간 15,000여명은 집합교육 형태로, 10만여명은 인터넷교육 형태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수료 시 소상공인정책자금 용자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현조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올해부터 반드시 창업교육을 이수해야만 정책자금 등의 수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창업교육과 더불어 산재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분명히 산재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의 주된 창업 업종인 음식점 및 도소매업 관련 업종의 경우 소규모사업장에서의 재해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지난해 기준으로 음식점 및 도소매업종 전체 재해의 60%(8,582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이런 현상은 신규 사업장일수록 더욱 짙게 나타난다. 2009년 기준으로 2년 미만 신규 저비즈니스 사업장 재해의 73.6%(4,961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대다수 산업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 당시부터 안전보건교육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석면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폭 강화

신체 또는 피복오염 우려 작업에 대한 세척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최근 청소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열작업과 한랭작업 등 특정작업장 이외에도 고온·저온 또는 다습한 옥내 작업장은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통해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고열작업장 등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 외에도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에는 고열작업, 분진, 방사선, 병원체, 관리허가대상 유해물질, 석면, 금지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세척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체 피복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작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 제거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사업주로 하여금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시 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사전 확인토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종료일자 및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기준도 구체화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 중 방진마스크의 경우 보호구 의무안전인증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석면취급 장소에 필요한 등급 기준(특급 방진마스크)을 명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작업특성상 석면분진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보온재 또는 내화 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에 대해서는 호흡보호구 중 그 성능이 보다 우수한 송기 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토록 했으며, 작업 시 감싸야 하는 신체의 범위에 손이 포함되므로 지급·착용대상 개인보호구에 보호장갑을 추가했다.

그리고 작업근로자가 작업장 외부로 나가는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한 개인보호구의 석면분진을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반드시 제거토록 했다.

석면폐기물 처리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도 신설된다. 사업주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폐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분진발생 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또 해당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토록 하고, 오염된 보호구 및 작업복은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하여 처리토록 했다.

이외 개정안은 밀폐공간에 대해 작업할 때 외에 평상시에도 관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토록 규정하는 등 밀폐공간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 취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신임이사장으로 백헌기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백 헌기이사장은 1973년 선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셰퍼드대학교(Shepherd Univ)와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왔다.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노사관계 전문가로 그동안 국무총리 표창(1995년)과 금탑산업훈장(2008년) 등을 수여받은 바 있다.

백 신임 이사장은 지난 7월 15일 공단 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0.6%대 재해율에 진입했지만, 아직도 선진국 수준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한 너무 많다”라며 “그 중에서도 안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재해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등 사회 각 주체의 역할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노동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와 국가발전의 기본이 되는 ‘안전보건’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안전·산업보건 기준 통합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이 20년 만에 통합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등이 보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6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규칙은 1990년 7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이 분리 제정·운영된 이래 20여년 만에 통합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규칙과 보건규칙으로 분리 운영되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산업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보완됐다. 이에 따르면 유해·위험요인별로 각 개별조항에서 각 규정하던 유사 규정이 한 개 규정으로 통합된다.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출입금지, 작업계획서 작성, 양중기 등의 신호, 방호장치의 조정, 과부하의 제한 규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안전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지난 2009년부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시행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도방지와 방호장치 정상 작동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조선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소작업대’에 의한 협착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호가드 설치, 정격하중 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추가했으며, 도장부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gun)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종전의 환기조치 외에 천기기기 외부 설치, 조명등 밀봉 등의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스템 비계’, 갯폼 등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기작업 위험방지 규정을 정비했으며, 안전난간 설치기준, 추락방지 조치, 이동식비계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사업장 관계자들이 규칙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법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산업환경 및 기술의 변화 등을 감안해 안전보건기준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산재해율 0.41%, 환산재해자수 3,728명

올해 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 101개사가 정기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41%로 밝혀졌다. 건설업 환산재해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728명으로 전년(3,982명)에 비해 254명(6.4%) 감소했고, 평균재해율은 2009년의 0.50%보다 0.09%p(18.0%)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1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올 하반기 중에 정기감독을 실시기로 했다.

반면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255개사)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해줄기로 했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6개사는 이번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3~5%의 감액을 받게 된다. ☞